

자체평가 규정

제정 2009. 04. 15.
제5차 개정 2019. 11. 20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“상지대학교 학칙” 제82조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·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면개정 2018.08.29]

제2조(적용) 자체평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[본조신설 2018.08.29]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자체평가”라 함은 대학 및 평가대상 교육·행정단위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·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.
2. “교육·행정단위”라 함은 단과대학, 대학원, 행정부서, 부속·부설기관 및 산학협력단을 말한다.

[제목개정 2018.08.29]

[전문개정 2018.08.29]

제4조(평가대상) 평가대상은 상지대학교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개별 교육·행정단위를 평가대상으로 할 수 있다.

[제목개정 2018.08.29]

[전문개정 2018.08.29]

제5조(평가영역) 평가영역은 기관평가인증 및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19.11.20)

1. 교육·연구 영역
2. 조직·운영 영역
3. 시설·설비 영역
4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영역

[본조신설 2018.08.29]

제6조(평가시기) 자체평가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19.11.20)

[전문개정 2018.08.29]

제7조(평가방법 및 절차) ① 기획평가처장은 자체평가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은 후 자체평가를 실시한다. (개정 2019.06.25)

② 기획평가처장은 자체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시행계획을 전 부서에 사전 공지하여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(개정 2019.06.25)

③ 자체평가는 각 교육·행정단위의 제출 자료에 의한 서류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④ 평가영역, 평가지표 및 평가배점 등 평가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계획 수립 시 결정한다.

⑤ 학과 및 단위부서 외부 평가인증을 위한 자체평가는 기획평가처와 협의를 거쳐 단과대학 또

는 담당부서에서 진행한다. (신설 2019.11.20)

[제목개정 2018.08.29]

[전문개정 2018.08.29]

- 제8조(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)** ① 자체평가의 결과는 교내 언론매체,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.
② 자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 교육·행정단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·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③ 자체평가의 결과는 장단기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,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·연구의 질 제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8.08.29]

제2장 평가기구

- 제9조(자체평가기획위원회)** ① 자체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자체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위원회를 둔다.

1. 자체평가 기본 계획 및 전략 수립
2. 자체평가 결과 및 활용 방안
3. 기타 자체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부총장, 교육연구처장, 기획평가처장, 학생행복처장, 대외협력처장, 입학홍보처장, 행정지원처장, 학술정보원장, 산학협력단장과 단과대학장은 당연직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.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인 이내의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. (개정 2019.06.25)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[제목개정 2018.08.29]

[전문개정 2018.08.29]

- 제10조(자체평가연구위원회)** ① 자체평가 운영에 대한 기획 및 연구를 위하여 자체평가연구위원회를 둔다.

② 자체평가연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자체평가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체평가 지표의 개발과 연구
2. 자체평가 평가 자료 수집 및 분석
3.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
4. 자체평가기획위원회 및 총장에게 자체평가 결과 보고
5. 기타 자체평가 기획 및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[본조신설 2018.08.29]

- 제11조(자체평가실무위원회)** ①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②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평가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자체평가와 관련된 행정부서의 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19.06.25., 2019.11.20)

③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체평가 계획·진행·결과분석 등의 실무
2. 자체평가 관련 각종 행정지원

[전문개정 2018.08.29]

제12조(행정 지원) 자체평가 업무의 제반 행정지원 업무는 기획평가처에서 담당한다. (개정
2019.06.25)
[본조신설 2018.08.29]

제13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체평가기획위원회
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18.08.29]

부 칙(기획예산과-470, 2009.4.15)
이 규정은 2009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기획예산부-292, 2010.3.4)
이 규정은 2010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기획예산부-143, 2015.2.17)
이 규정은 2015년 0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기획예산팀-448, 2018.08.29)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자체평가기획위원회 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.

부 칙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)
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기획예산팀-573, 2019.11.20)
이 규정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